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2015. 4. 14. 시행)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응자포함) + 프리미엄] × 상한요율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2015. 1. 6. 시행)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 「주택·오피스텔 외(토지·상가 등)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